

# 경기 중 개인별 위치추적장치(GPS) 사용 허가

2020.05.07.(목) 대한요트협회

## 1. 배경

- 가. 올림픽, 세계 선수권대회 등에 출전하는 국내 선수들의 최대 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전략, 전술 운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훈련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경기 중 자신이 범주한 경로를 추적하여 자신의 전략, 전술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전자장비의 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러한 훈련 효과는 연습경기에서보다는 치열한 공식 경기에서 더 크게 나타나게 되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함.
- 나. 외국 선수들은 훈련과 모의 레이스 중에 저장한 위치정보로 레이스를 복기하고, 자신의 전략, 전술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다. 2019년 2차 기술위원회(07/11 공항)에서 본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공식 대회의 경기 중에 GPS 위치추적장치를 선수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나, 불공정한 사용은 금지되어야 함.
- 라. 대부분의 덩기 클래스규칙은 위치추적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국가협회, 대회공고, 세일링세칙에서 허가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월드세일링에서는 기술추세를 반영하여 논의를 계속하고 있음.
- 마. 올림픽, 선수권대회 등에서는 방송용 또는 관람용 등으로 위치추적장치를 이미 각 보트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2. 허가 내용 및 적용

국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대회는 대회공고 또는 세일링세칙에 다음의 문구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비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며 통신제한에 관한 조항을 통해 지도자를 포함하여 제3자와의 실시간 정보공유는 금지하는 것을 대한요트협회의 방침으로 한다. 다만, 대회별 주최 또는 주관단체가 대회공고 또는 세일링세칙을 통해 위치추적을 위한 전자장비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 무선통신 및 위치추적

모든 보트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기 중에 무선통신을 전송해서는 안 되며 모든 보트가 이용할 수 없는 무선통신을 수신하면 안 된다. 이 제한은 휴대전화에도 적용된다.

각 클래스 규칙을 변경하여 보트의 위치와 속도를 계측하고 저장하는 전자장비의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이렇게 취득한 정보를 시스템 운영자 외의 제3자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은 금지한다.

※근거: 대한요트협회 2020-2차 기술위원회 의결